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2528(본소), 2019가합509231(반소)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 매매대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남희용, 송원일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울

담당변호사 박영기, 심보선, 정태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제영

변론 종결2020. 11. 20.

판결 선고2021. 1.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1,979,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1) 2. 반소2)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3) 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775,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복사기 등의 제조, 임대, 판매, 보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광고기획업, 디자인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품 공급계약 체결

1) 피고는 C에서 공고한 담배광고 그림 납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2017. 5. 19. 원고와 사이에 'T' 제품 2대(이하 '1호기', '2호기'로 구분하여 칭한다)를 1대당 공급대금을 각 115,5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호기에 대한 계약금 5,77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만, 피고가 위 계약 체결 이후 1호기에 대한 77,000원 상당의 옵션을 취소하여 1호기의 실제 매매대금은 115,423,000원이 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전자세금계산서).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5. 1호기를, 2017. 7.경 2호기를 각 납품 및 설치하였다.

다. 합의서 작성 등

1) 피고가 원고에게 1호기 노즐 빠짐 현상으로 인한 손해를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9. 11. 원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가 미지급 1, 2호기 공급대금 및 소모품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원고는 2017. 9. 15.까지 피고에게 41,839,033원에 상당하는 CMYK 잉크(이하 '소모품') 349개(개당 단가 120,000원)를 제공하고, 피고는 (주)D에게 22,616,000원을 지급하고, E에게는 920,000원을 각 2017. 9. 15.까지 지급해주기로 한다.
2. 전항의 소모품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17. 5.경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1호기의 고장(노즐 빠짐 현상)으로 피고가 피고의 고객에게 출력물을 적기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피고의 손해에 관해 원고가 현물로 변제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원고가 제공하는 소모품 제공의 대가에는 위 제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피고가 납품할 출력물을 (주)D 및 E에게 의뢰하여 대신 출력하게 하여 피고의 고객에게 납품한 대가로 피고가 (주)D 및 E에게 대금을 지불함에 따른 피고의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아울러 확인한다.
3.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소모품 매매대금 65,208,000원과 2017년 5월 출고된 제품(1호기) 및 7월 출고된 제품(2호기) 매매대금 225,148,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법인명의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제1항의 소모품을 지급받은 것을 조건으로 2017년 5월경 원고가 납품한 제품(1호기)에 발생한 고장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원고에게 제기하거나 그 어떠한 법적, 도덕적 책임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소모품 매매대금 65,208,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미지급액 56,831,482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3)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1호기 교체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1호기를 새로운 제품(이하 '3호기'라 한다)으로 교체하여 공급해주었고, 얼마 후 1호기는 회수4) 하였다(이하 피고가 최종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호기, 3호기를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미지급 매매대금 225,148,000원(= 매매대금 합계 230,923,000원 - 지급된 계약금

5,775,000원)과 미지급 소모품 대금 56,831,482원의 합계 281,979,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담당자에게 C의 납품 단가가 1㎡당 5,400원인데, 이에 맞추어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구매하겠다고 하자,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1㎡당 잉크소모량이 1,800원 정도 소모된다고 이 사건 제품을 추천하여 구매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잉크소모량이 1㎡당 4,000원 정도 소모되어 다른 비용까지 고려하면 납품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고가 수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이 사건 제품 중 1대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1대 역시 성능 미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공급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5,77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은 피고로부터 C에 대한 납품 단가를 들은 적 없고, 다만 일반 소재 기준으로 잉크소모량을 설명했을 뿐인 점, 피고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전문가로 C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백라이트 소재를 직접 가져와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샘플 테스트를 거친 다음 제품을 구매한 점, 잉크소모량에 관한 것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잉크소모량과 관련된 피고 채무불이행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제품 문제점(밴딩현상 등)은 소모품인 프린트 헤드 미교체 등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일 뿐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제품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영상만으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석

판사송현직

판사김선역

별지

1) 원고는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청구원인을 합의서에 기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합의서에는 변제기, 지체이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2)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3) 피고의 2018. 12. 3.자 반소장에 첨부된 별지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별지로 선택한다.

4) 피고는 3호기를 공급받은 후에도 한동안 1호기를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5) 피고는 2019. 7. 15.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등에 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0. 제9차 변론기일에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